

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건축물 신축 및 증축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인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		
사업비 (당해년도)	89,200천원	(국비)	(사비)89,2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문화본부	디자인정책과	김선수 2133-2700	김태수 2133-2715	김홍기 2133-271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43,700	(x-) 89,200	(x-) 45,500	(x-) 104
사무관리비	(x-) 40,000	(x-) 85,500	(x-) 45,500	(x-) 113
시책추진업무추진 비	(x-) 3,700	(x-) 3,700	(x-) 0	(x-) 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
사무관리비	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
	○ 심의위원 참석수당 150,000원*18명*20회	=	54,000천원
	○ 심의위원회 사전심사수당 70,000원*18명*20회	=	25,200천원
	○ 심의위원회 운영(회의자료인쇄, 용품비, 다과비) 6,300,000원	=	6,300천원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 3,700,000원	=	3,7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건축물 신축 및 증축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인 미술작품의 예술성, 공공성,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정·평가함으로써 수준 높은 미술작품 설치 유도

□ 사업근거

-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
-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9. 1. ~ 12월
- 사업내용 : 미술작품의 예술성, 공공성,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
- 총사업비 : 89,200천원

□ 추진경위

- '72~'94 : 문화예술진흥법 근거조항 마련, 설치권장 추진
- '95.7월~현재 : 설치의무화(대통령 공약사항)

□ 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89,200	
심의회의	2019.01~2019.12	89,200	심의 위원회 개최(월2회)
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	2019.01~2019.12		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

4

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○ 심의 23회, 심의작품 280건
2017년도	○ 심의 18회, 심의작품 202건
2018년도	○ 심의 15회, 심의작품 312건('18.9월말기준)

향후 기대효과

-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

5

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43,500	(x-) 0	(x-) 0	(x-) 43,500	(x-) 39,895	(x-) 0	(x-) 3,605
2016	(x-) 43,500	(x-) 0	(x-) 0	(x-) 43,500	(x-) 40,671	(x-) 0	(x-) 2,829
2017	(x-) 43,500	(x-) 0	(x-) 0	(x-) 43,500	(x-) 43,338	(x-) 0	(x-) 162